

#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집행 지침

제정 2025.10.21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」에 따른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집행과 관련하여 장려금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장려금의 지급 대상, 범위 및 지급 상한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본교에서 지원하는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전반에 적용한다.

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2장 장려금 지급

**제3조(지급대상)** ① 장려금 지급 대상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비전임교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지급범위)** 장려금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논문 게재
2. 저역서 출판
3. 전시·발표
4. 학술대회 주제발표(구두, 포스터)
5. 논문 게재료 지원금

**제5조(기준일)** ① 장려금 지급 기준일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된 실적으로서 우리 대학교 재직 중의 실적에 한한다.

② 연구성과물의 인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논문 및 저서는 온·오프라인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최초 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
2. 전시 및 발표는 실제 전시 또는 발표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.
3. 수상은 상장이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**제6조(개인별 상한액)** ① 장려금 지급액은 「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」 별지 제2호 서식(학술연구 활동장려금 지급 기준표)에 따른다.

② 장려금 지급 상한액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지급 비율 및 횟수 등 세부 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학술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1. 논문 게재(전시·발표) 및 저서 출판 : 「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」 별지 제2호 서식(장려금 계산 적용비율(%) 지침)에 따라 지급하되, 총액은 최대 200%까지만 지급한다.
2. 학술대회 주제발표 : 국내·외를 포함하여 연 1회 지급한다.
3. 논문게재료 지원 : SCI급 및 KCI·SCOPUS 논문에 대하여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, 교내·외 연구비 결과물은 제외한다.

**제7조(예산액 및 집행 관련 조치)** ① 장려금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하며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

② 당해 연도 예산의 부족, 지급 신청자 초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예산 배정액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지급 제한

**제8조(지급 제한 대상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.

1. 「교수 연구년제 시행 규정」 제12조 제4항에 따라, 연구년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연구실적물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교원
2. 「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」 제2조에 따라,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로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을 신청한 교원
3. 교내연구비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교원
4. 「교원인사규정」 제25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미 충족한 교원
5. 서면 주의, 경고 등 인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
6. 「교수업적 평가 규정」(별표 9) '승진임용 평가기준'을 미 충족하거나, 동 규정 (별표6) '필수평가항목 및 기준'을 미 충족한 사유로 승진 심사가 제외된

## 교원

### 제4장 신청 및 지급 절차

제9조(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) ① 장려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술연구 활동 장려금 지급 신청서
  2. 연구실적 증빙자료(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)
  3. 연구윤리 교육 이수증
    - 가. 인정기관 :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, 카피킬러 에듀, 기타 학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교육과정
    - 나. 이수시간 : 2시간 이상 과정
    - 다. 이수시기 : 당해 연도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
- ② 제출기한 및 방법은 별도 공지에 따른다.

## 부칙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